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Method of Modern Registered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신 응 주* 이 상 선**
Shin, Woong-Ju Lee, Sang-sun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preservation of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ggested approach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we need to employ both structure-based classification and style-based classif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for modern architecture properties need to include more detailed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ir structure: brick structure,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post lintel structure. In terms of construction style, the properties need to b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western style, the traditional style and the Korean-western eclectic style. In addition, protec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need to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of a protection system. Second, while the current system sets out six methods for preserv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more specific preservation methods types and plans need to be continuously introduced. In particular, as for the method of partial preservation, the method needs to be further classified based on the usage of the relevant structure so as to allow for more diverse options. First, the 'Preservation by Interior Altera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category, where the exterior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interior is preserved through alteration. Also needs to be added the preservation method where the interior space is preserved as it is and the exterior space is altered, in case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exterior has deteriorated. Third, if the records o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are to provide the functions of legal evidences regarding management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sources of knowledge required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nd past management record for the future, each phas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in an organic manner, and we need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and plan that go beyond the relevant organizations. Fourth, in order to preserve South Kore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architecture in its original stat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separate criteria for registration of technicians with expertise on modern architecture, and train experts and technicians on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키워드 : 근대건축, 등록문화재, 보존, 문화재보호법, 인센티브

Keywords : Modern Architecture,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Incentiv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근대건축의 대부분은 등록문화재로 일반적인 건축물처럼 경제적인 목적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 고쳐지거나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건축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제도인 등록문화재 제도¹⁾는 경제논리

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다르게 소유자와 국민들의 성숙한 보존의식을 이끌어 내어 보존을 지속해야 하지만 아직 이해와 합의가 부족하여 제도의 정착과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재평가하는 일각에서는 '20세기는 전근대와는 차별되는 시기로 전통과 현대

* 정회원,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 정회원, 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mail : cdass@naver.com

이 논문은 2012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근대건축물이 현재도 소유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문화재만큼 강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보완조치

로서 근대건축물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2년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이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되었다. 2005년 7월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문화재 등록대상을 건조물·시설물뿐 아니라 역사유적, 생활문화자산,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세계 혜택 등을 부여하였다. 2014년 1월 현재 594건의 등록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

를 잇는 역사적 시기로 보고, 당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인식의 시각도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근대문화유산의 적극 보존」이라는 보도자료²⁾로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후 건축 문화유산은 소멸과 훼손의 위협이 크고 복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급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각종 보존대책과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보존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등록문화재 제도에 의해 선정된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는 전통건축과 달리 다중, 다양하고 대량, 대규모이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존의 범위와 방법 등에서 많은 숙제를 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제도 및 방법의 측면에서 방안을 계획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전환 측면에서 보존³⁾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첫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제도와 등록에 대한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재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해 언급하였고 둘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부분 보존의 원칙에 입각한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수리기술과 기록의 집적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이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이므로 등록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 근대건축의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근대건축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고찰

근대건축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연구의 동향은 보존방안, 활용방안, 현황과 사례, 변천과정 분석 등 4종류로 분류된다. 보존과 활용방안 동시에 제시한 연구는 김동식, 전민중, 이해민, 윤보기 등 14편⁴⁾으로, 보존방안은 등록문

화재 등록기준의 재설정, 시대적 구분 명시, 통합적 시스템구축, 기록관리의 방안,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지도와 교육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활용방안은 근대건축의 재생, 콘텐츠 발굴, 사업비 지원정책, 소유자의 인센티브 강화, 구조적 안전성과 설비의 보강,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근대건축 및 등록문화재의 현황사례를 통한 분석은 김정동, 키미지마 카즈히코, 윤성훈의 연구⁵⁾가 대표적인데 김정동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유형을 제시한 1990년대 초반의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되고 키미지마 카즈히코는 일본 도쿄 근대건축물의 현황과 보존방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근대건축물에 관한 행정 및 보존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윤성훈의 연구는 해외의 근대건축물의 변화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근대건축물의 활용이 잘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 대상을 분류하였다.

근대건축의 변천과정 연구는 조홍석, 김진안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홍석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형성과 변천 원인을 제시한 것으로 충남지역의 근대건축물이 변천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보존상태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김진안의 연구는 광주지역으로 제한하여 근대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연도별 근대건축물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선행연구자의 근대건축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연구의 내용은 근대건축의 문화재 유형분류, 등록, 활용, 지속 보존 방안 등 거시적 개념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고찰, 지정문화재 제도와 비교를 통해 근대건축유산의 보존적 측면에서 등록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2003,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보기,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홍순,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활용에 관한 연구, 2003,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민중, 近代建築物의 保存·活用을 위한 登錄文化財 Incentive 制度 實效性에 關한 研究, 2006,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진, 교회건축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과제, 2002, 한국교회사연구회 소
 김종현,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06, 배재대학교 공학연구
 이주형,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3호
 임용래,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연구, 2008,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신혜, 근대건축물(近代建築物)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홍석,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NT운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구조계, 20권, 1호
 강수나,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2009, 한국기록학회, 19권
 박근수,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2003,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김정동, 대전의 근대건축 목록과 유형조사 연구, 1993, 건축도시환경연구, 1권
 키미지마 카즈히코, 동경의 근대건축물 현황과 보존방식, 2005, 서울학연구, 25권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 동시제재(2000. 2. 1)

3) 보존(保存)과 보전(保全)은 사용상 약간의 혼동이 따른다. 비록 영어사전에서 보존(preservation)과 보전(conservation)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보존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보전은 그 성질이나 속성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가치 유지를 위한 내용과 방안이 주를 이루므로 보존(保存, preservation)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김동식, 近代建築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關한 研究, 2001,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화재 제도의 개선 방안, 보존방식의 다양화 방안, 수리 기술과 기록의 집적화 방안, 수리전문인력 확충방안 등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등록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고찰

2.1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등록제도와 현황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지정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중심으로 채택되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대상 문화재를 지정하고, 해당 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 및 관련자의 재산권에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고 규제와 지원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제도이다. 이런 지정문화재 제도는 과거 성숙하지 못했던 국민의식에 대항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 한국의 문화재 관리사에 큰 공헌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성숙단계에 이르면서 전통적인 문화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 문화적인 증거물에 대한 가치의 재해석이 진행되면서 문화재의 보호 방법의 다양화, 특성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반영은 최초로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근대 문화유산의 신고제도와 지도, 조연,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조치를 취하는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제도에 투영되었다(2001년 7월 1일 시행). 이는 지정문화재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급격히 알려지게 되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되는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건축에 대한 폭넓은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다.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종래의 지정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신고제와 지도, 조연,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동산문화재 보호의 보완조치로서 등록제도가 폐지(1984. 12. 31)된 이후 등록제도로서는 두 번째의 도입이고, 건조물 문화재보호의 보완조치로서 집단적 전통건조물의 보호제도인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1999. 7. 1) 이후 건조물보호제도로서도 두 번째의 도입이다.

특히, 등록문화재제도 도입당시 그 등록대상이 근대문화유산 중 건조물 또는 시설물에 한정되게 되었던 것은 근대건조물의 경우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래의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전승된 것도 있는 반면, 외래 문화가 이입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심지어 근대사회로

들어지면서 그 이전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그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여 극히 일부만이 보호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성 등으로 이미 멸실되었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가 시급하였음에 기인한다.⁶⁾

2.2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징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 자체로서도 보존가치가 있기는 하나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⁷⁾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⁸⁾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별하기 위한 등록기준⁹⁾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¹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등록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¹¹⁾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등록문화재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때에는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¹²⁾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¹³⁾

그러나 등록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도¹⁴⁾를 채택함으로써 최소한의 규제에

6)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05, p.177-178

7)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제2항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

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1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11) 문화재보호법 제54조 제2항

1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1조

13)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1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머무르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강력한 규제와 차이가 있다.¹⁵⁾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존 원칙으로 하는 동결 보존을 목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지극히 큰 것을 엄선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지정기준에는 미흡하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호 의지를 바탕에 두고,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신고에 의해 유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건조물 중심의 지정문화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Comparative table of Modern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and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등록문화재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의 비교
문화재청, 근대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2005

	등록문화재 제도	지정문화재 제도
제도의 목적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보호의 대상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등록(지정) 기준	근대문화유산 중 원칙적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시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록주체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심의회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등록시 소유자동의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현상변경	신고 필요한 지도, 조인 권고 *해택을 받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허가 필요한 지시, 행위증지, 허가취소
영향을 미칠 행위	규정 없음	허가제한 것은 제외 필요한 지시 행위증지 허가취소
해택	국고지원 근거 규정	국고지원 근거 규정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하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문화재보호법 제50조, 다만, 건축물의 건축물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인, 권고등을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	지정문화재 제도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 적용	
세제지원	재산세 50%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주택양도시 1가건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비과세 상속세 등 비과세

2.2 등록문화재의 현황

현재 우리 주변의 많은 건물들은 노후화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경제논리로 인해 빠르게 지어지고 보다 빠르게 철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근대건축물 역시도 도심에 존재하는 위치상의 연유로 경제개발과 맞물려 그 소멸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근대건축물의 철거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 상실을 들 수 있다. 건축물의 기능 상실로 인한 관리 소홀 등으로 건축물이 방치되거나 폐기되어져 버린 경우이다.

둘째로 식민지 시대의 건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인위적인 파손이다. 이러한 경우가 한국 근대건축물의 소멸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셋째로 건축물 자체 시설이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의 한계로 철거되는 경우이다. 설비 및 구조의 노후화 문제는 건축물의 기능을 지탱하는데 경제적 타당성과 같이 맞물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토지의 경제적 효용까지 추구하고 도로 확장 등의 도시계획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경우로 많은 근대건축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 갔으며 이런 소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정과 등록을 통해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으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총 35건, 시도지정문화재가 90건, 등록문화재가 594건에 이른다.

Table 2. State of Spec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문화재지정과 등록 현황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35	25	46	19	594

근대건축의 훼손과 소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지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을 지정할 수는 없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쉽게 문화재로 지정되는 어렵다. 또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들은 정확한 조사 없이 전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기능적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근대건축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지정만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전방법이 요해진다.

16) 박용철, 근대건축물 보존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3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과 비슷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상존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과 관련성이 더 높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보존지구(17) 지정에 의해 더욱 굳건하게 보호를 받지만, 근대유산이 있는 토지 내에서 신축 행위 시에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이와 상충된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철거 행위를 포함하여 멸실이 되었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등 당해 등록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철거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정의 미비 뿐 만 아니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의지와 보존행위 또한 지속되지 못하는 현실에도 직면해 있다. 이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각종 혜택인 세제, 보조금,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등이 철거 후 신축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보다 낮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후 건축되었던 대부분의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들은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우선한 까닭에 문화재보호법상의 인센티브 제도인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은 결코 매력적인 제도가 아닌 것이다.

또한 넓은 부지 내의 한 쪽에 등록문화재인 근대건축물이 자리하여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수혜를 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영구히 변경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받아 근대유산을 보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방향인 등록문화재의 등록 반대나 철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¹⁸⁾

실제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많은 근대건축물이 등록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등록된 등록문화재는 대부분 공공건축, 학교법인, 종교건축 등의 유형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3.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6조,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보존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구분한다.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 건축은 세분된 지구별로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

18) 김수정,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 서울학연구, p.71

3.1 등록문화재 등록과 보존 제도의 개선

2001년 7월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논의의 내용 중 등록문화재 등록과 보존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없애거나 등급을 설정하여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재로 격상',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등록문화재 철거에 대한 법 규정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근대건축의 보존이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지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이에 등록문화재 등록제도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등록문화재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식에 의해 조적조(벽돌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양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 건축의 흐름상에서 근세 이후의 개항을 전후한 시기가 새로운 양식, 구법, 재료 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전환점으로, 대부분의 근대건축 등록문화재가 이 시기인 근대기를 기점으로 건축되었지만 구조형식과 건축양식상에서 다양한 건축행위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기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과도기로 인식하고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의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행위가 시도되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able 3. Categorize of Registerd Cultural Property
등록문화재의 분류

	분류기준안	
	유형	세부유형
구조형식	조적조	벽돌구조
		석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가구식구조	중량목조	
		경량목조
양식	전통양식	전통양식
	절충양식	중국절충양식
		일본절충양식
		서양절충양식
	서구양식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
		아르데코양식
역사주의양식		
	콜로니얼양식	

둘째,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문화재의 사전 보호 장치인 가지정제도를 등록문화재의 등록 내지는 지정 절차에 도입하여 근대건축의 건축

Table 4. Preceding design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등록문화재의 가지정제도

절차	기존	제안
신청	지자체장에게 신청	지자체장에게 신청
조사 및 검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	지자체에서 지정한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 검토 후 관보에 예고	지자체장이 검토후 가지정
		가지정 기간 종료후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 검토 후 관보에 예고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고시	관보에 고시	관보에 고시

행위나 멸실 신고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¹⁹⁾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건축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보다 강력한 보존수단을 검토하거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제도로 강화하자는 논의²⁰⁾도 있으나 등록문화재 제도를 문화재보호법의 틀에 존치시키되 지정과 보존에 대해서는 법제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등록문화재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보조금 지원²¹⁾,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²²⁾,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²³⁾, 상속세 징수유예²⁴⁾,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²⁵⁾, 재산세 50%범위 내 감면²⁶⁾ 등이 있다.

이들 중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이다. 이는 소유자의 건축행위가 해당 필지가 갖는 법적 면적 한계선까지 이용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이상의 일정 면적을 인센티

Table 6. Proposal of incentive system of floor-area ratio and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제안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법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부여
제안	용도지역 및 지구별 차이에 따라 수혜비율도 조정

브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둔 특례이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용적률이 낮은 지역, 높이 제한이 낮은 지역에서는 인센티브의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절대적인 수치인 150% 내에서 정하는 것보다 용도

19) 김정동, 근대문화유산의 역사 학술적 가치 정책세미나, 문화재청, 2000, p.39, 김창규, 근대유산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의 법제개선방안, 2006, 토지공법연구, 제34집, p.329에서 재인용

20) 김수정, 위와 같은 논문, p.80
김창규, 위와 같은 논문, pp.328~329

21) 문화재보호법 제51조

22) 문화재보호법 제57조

23) 문화재보호법 제52조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2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

26) 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시안 시달, 2001.7

지역 및 지구별 차이에 따라 수혜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넷째, 등록문화재 철거와 관련된 범규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당시에는 근대건축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경제논리에 의한 재산권 행사시에는 철거되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록된 등록문화재의 철거에 대한 범을 강화하여 30일 전에 신고하여 별다른 제약 없이 철거할 수 있는 현행 제도²⁷⁾에서 장기간의 철거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등록문화재가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 현재의 신고사항²⁸⁾으로 신고서에 서명을 통해 처리되는 것에 추가하여 ‘등록문화재 보존 이행 각서’ 제도를 도입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Table 5.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disposal and removal
철거와 매매의 법제도 개선 제안

범규정	현행	제안
철거	30일전에 신고	90일 전에 신고
매매	신고서에 서명	신고서에 서명
		등록문화재 보존이행각서 작성

3.2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식 다양화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식은 여섯 유형으로 구

Table 7. Preservation type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보존방식

	보존방식	내용	
보존 장소	현지보존	건축물의 신축당시의 장소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	
	이축보존	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장소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식	
보존 범위	전체보존	건축물의 남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식	
	부분보존	외관보존	외벽 전체 또는 부분을 보존하거나 현관 또는 외부 창과 창틀 등을 보존하는 방식
		내부보존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
		외부변경보존	실내공간의 구성이 보존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마감재, 조명기구, 가구, 창호 등 실내요소를 보존하는 방식
		이미지보존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로 인하여 내부공간은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 또는 한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특징적 이미지를 보존하는 방식
보존 상태	원형보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건립당시 그대로 보존되는 방식	
	증축보존	건축물의 활용에 따른 수요공간을 수평과 수직 또는 내외부로 증축하여 보존하는 방식	
	원형복원	전체복원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의 전체를 신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
		부분복원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의 일부분을 신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
개수보존	노후화로 인한 안정상의 문제로 개수 및 보수하여 보존하는 방식		

27) 문화재보호법 제56조 제1항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2(개정 2014.1.28.)

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존유형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존범위 중 부분보존의 경우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내부변경보존’과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 등으로 인해 내부공간을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보존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재 등록절차에서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청의 관계자에 의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등록되는 단일 등급을 갖는 문화재이므로 검증의 과정이 취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소속감이 약하며, 등록절차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통해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의 관리 단계를 거쳐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들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다. 이런 단계에서 문화재의 가치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의 방법으로 등록문화재의 등급을 설정하고 보존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등록문화재 보존방식의 방안으로 범위에 따라 적용 건축법, 세금감면, 경비보조 등을 차등하는 세부등급을 마련할 수 있다.

Table 8. Incentives and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등록문화재의 보존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규제

구분	보존등급			
	I	II	III	
보존범위	전체보존	부분보존		
규제	현상변경 철거행위	제한 불가능	가능 허가 신고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수혜	수혜	-
	경비	지원	지원	지원
	상속세	유예	유예	-
	재산세	감면	-	-
	양도소득세	수혜	-	-
지정문화재신정	가능	조건부가능	보존등급으로 가능	

등록문화재의 규제와 인센티브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각종 행위의 규제 중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전체보존을 전제로 하는 ‘보존등급 I’의 경우 제한을 두고 부분 보존하는 ‘보존등급 II’는 부분제한, ‘보존등급 III’는 기본적인 현상변경을 신고제에 의해 가능토록 한다. 철거행위 역시 등급별로 구분하여 규제, 허가, 신고로 구분한다. 등록문화재의 등급별로 인센티브도 차등 적용하는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혜택, 상속세 감면 등은 ‘보존등급 I, II’만 수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보존등급 I’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보존에 등급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근대라고 지칭하는 시기의 재해석 및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지금의 등록문화재도 역사성, 예술

성, 학술성이 인정되어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면 지정문화재 제도와 연계해야 하므로 지정문화재로의 승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3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이력관리 방안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기록들이 건축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차후 등록문화재 관리의 이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체계 및 방안이 필요하다.

근대건축 등록문화재는 가치평가, 문화재 등록, 기록화 및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단계, 수리공사 및 공사완료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이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력과 기록들은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생산되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이력이 누락되거나 재생산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 의해 추진되는 기록화조사보고서의 결과 제출물로 기록화보고서, 도면과일, 사진자료 등이 있지만 등록과정에서 이미 생산된 기본적인 건축사양 및 특징의 자료는 구득이 어려워 배제되고 있는 실정

Table 9. Detail Guide of Record Management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안

단계	이력관리 사항	
지정 및 등록단계	- 기본적인 건축 사양 및 특징	
실측 및 설계단계	작업 계획 수립 및 업무 협의	- 과업수행일정, 참여자명단, 역할, 연락처 - 자료조사 계획 - 실측도면 작성 범위 및 방법 - 기록용 사진 촬영 범위와 정확한 위치 및 구도
	연혁 및 문헌 수집	- 건축적 배경, 지리적 특성 - 건축물과 관련된 인문, 역사적 배경, 증언, 기록 - 건축물에 남아 있는 기록 및 명문 - 관련문헌 및 연구자료 - 소장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의 검색
	현황 조사	- 건축물의 배치 - 건축적 특성, 각 실별 용도(과거와 현재) - 건축물의 노후 및 훼손상태 - 건축물의 변형 및 수리실적 - 조경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실측 조사	- 현황의 정확한 실측 - 부속건축물, 민속유물, 수목 등에 대한 조사 - 상세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야장의 작성
	도면 작성	- 실시도면에 준하는 건축도면 - 도면의 분류체계 정비
공사 및 수리완료 단계	- 과거의 수리기록을 포함한 수리보고서 - 공사기준, 관리방법, 공사절차 등의 이력정보	

이다. 또 기록화보고서 진행 단계에서 생산되는 도면자료는 수리를 위한 실측 및 설계단계에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선행되어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불신, 저작권 관련 문제, 자료 구득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생산에 의해 누락되는 당해 문화재의 이력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집적하고

제공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는 등록문화재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생산 가능한 결과물들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력관리를 공유하고 재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등록문화재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수리 전문인력의 확충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진행되는 건축물의 보수와 정비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최대한 원형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근대건축을 포함한 건축문화재의 수리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르게 그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합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된 문화재청의 인정자격은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가 있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관련된 기술자·기능자·업자의 기술업무 영역에 있어 근대건축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전통적인 한식의 목공과 석공뿐으로 근대에 외국의 영향으로 건축된 한국근대건축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근대건축의 수리과정 상의 문제점은 최근 시행된 몇몇 등록문화재의 보수공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대부분 한국의 전통방식의 건축기술이 몸에 밴 문화재수리업자들이 외국의 영향을 받은 근대건축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수리하기에는 기술적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도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한국근대건축의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통건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에 의해 수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함께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내용에도 근대사를 비롯한 근대건축의 구조 및 수리의 분야도 확장하여 다룸으로써 근대건축의 실무자 양성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와 개화기 이후인 근대에 건축된 것이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대건축과 관련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현재의 전통건축 관련 기술에 의한 보수 실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제도 및 방법의 측면에서 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보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등록제도 상의 구조적 분류와 양식적 분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으로 구조형식에 의해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가구식구조 등으로 세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건축양식에 의해 서구양식, 전통방식, 한양절충식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등록문화재 보호 장치의 법제화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을 권고하는 수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 유산을 집중 조사하여 사전보호 장치의 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절대적인 수치 내에서 정하는 것보다 용도지역 및 지구별 차이에 따라 수혜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방식은 여섯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존유형과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존범위 중 부분보존의 경우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내부변경보존'과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 등으로 인해 내부공간을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보존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문화재 등록절차에서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기록들이 건축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차후 등록문화재 관리의 이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기관에 국한되지 않

Table 10. The criterion which technician equipped with the professional techniques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수리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분야

근대건축의 수리 실무분야		업무내용	필요
목조 트러스 지붕	양식,설계	양식상, 구조형식상의 체계, 구조원리, 결구의 특징	
	보수,제작	목조트러스 보수를 위한 해체, 수리, 제작	○
지붕	재료,마감	기와, 슬레이트 등의 지붕마감재에 대한 실무지식	○
	내부	조적벽체의 마감재 유형 및 시공방식	
조적벽체	(공동) 조적술	벽돌의 종류별 조적벽체의 쌓기 방식 및 기술	○
	보존처리	풍화에 의한 벽돌 훼손과 구조적 성능 악화의 예방	○
	보수,제작	조적벽체의 부분적 보수를 위한 기법 및 벽돌제작술	○
목재 창호	양식,설계	창호 양식의 분류, 디테일 설계	
	보수,제작	창호의 보수, 복원을 위한 제작, 창호절물 제작	○

는 관리체계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함께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문화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당해 문화재의 보존과 함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며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채 문화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미래의 문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정당한 가치부여를 통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시행령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김동식, 近代建築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관한 研究, 2001,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2003,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윤보기,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2003,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권홍순,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활용에 관한 연구, 2003,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진민중, 近代建築物의 保存·活用に 위한 登錄文化財 Incentive 制度 實效性에 關한 研究, 2006,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김정신, 교회건축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과제, 2002, 한국교회사연구소
12. 김종현,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06, 배재대학교 공학연구
13. 이주형,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3호
14. 염용래,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생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연구, 2008,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조신혜, 근대건축물(近代建築物)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조홍석,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NT운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구조계, 20권, 1호
17. 강수나,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2009, 한국기록학회, 19권
18. 박근수,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2003,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김정동, 대전의 근대건축 목록과 유형조사 연구, 1993, 건축

도시환경연구, 1권

20. 카미지마 카즈히코, 동경의 근대건축물 현황과 보존방식, 2005, 서울학연구, 25권
21.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접수일자 : 2014. 1. 10

심사완료 : 2014. 2. 20

게재확정 : 2014. 2. 22